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8가단7106 판결 [구상금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8나8320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8가단7106 판결

전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 고 1. B

2. C

변론 종결 2018. 10. 19.

판결 선고 2018. 11. 9.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56,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1.부터 2017. 12. 1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2018. 2. 8.까지는 연 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6,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1.부터 2017.12. 1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2018. 2. 8.까지는 연 9%의,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이 2014. 11. 17. 전세자금대출거래약정에 따라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142,5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E으로부터 광주 북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6. 11. 28.까지, 보증금 180,0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에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담보한도액을 171,000,000원으로 한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피고 B은 또 소외 회사와의 전세자금대출거래약정에 추가하여 2014. 11. 17. 원고와 개인금융신용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 B이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피고 B이 지급보험금 해당액을 법정대위자인 원고에게 즉시 변제하기로 되어 있다(추가약정서 제4조).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순차로 2014. 12. 1. H 명의로, 같은 해 12. 15. 피고C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 B이 대출금을 연체하자 원고가 2017. 11. 10. 소외 회사에 보험금으로 156,750,000원을 대위지급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질권을 양수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7. 12. 7. H에게 질권 설정 및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개인금융신용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추가약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채권양도의 통지는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가리키며, 이와 같이 도달은 보다 탄력적인 개념으로서 송달장소나 수송달자 등의 면에서 위에서 본 송달에서와 같은 엄격함은 요구되지 아니하며, 이에 송달장소 등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므로, 채권양도의 통지는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에 관한 규정에서 송달장소로 정하는 채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라도 채무자가 사회통념상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됨으로써 족한데, 피고 C아들 I가 2018. 2. 8. 피고 B의 주소지에서 이 사건 소장에 첨부된 2018. 1. 3.자 질권양도통지서를 송달받았으므로, 피고 C에게도 질권양도의 통지가 도달된 것으로 보아야하고, 따라서 피고 C도 원고에게 구상채무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은 원고가 2018. 1. 3. 소외 회사를 대리하여 질권양도 통지를 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B은 임대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는 것인데, 피고 C이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친 날이 2014. 12. 10.인 점에 비추어 볼 때, I가 2018. 2. 8.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소장에 서증으로 첨부되어 있던 질권 설정 및 양도 통지서 사본을 전달하였더라도 그 때는 이미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이 피고 B에게 반환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이러한 통지로서 피고 C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에게 156,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 다음 날인 2017. 11. 11.부터 30일이 지난 2017. 12. 10.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이자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8. 2. 8.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J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남천